

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1995년 8월 11일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95. 7. 31

나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95. 7. 31

라. 상정 및 의결

○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임시회

·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: 95. 8. 9

·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: 95. 8. 9

2. 제안설명요지 (설명자 : 호적계장)

가. 제안사유

○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
중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과태료부과기준중 신고의무자의 학력, 생활정도, 해태이유, 해태지역 등을 삭제(안 제4조제1항)

○ 과태료 부과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신고(신청) 지연사유서의 첨부

부를 생략할 수 있음(안 제5조제1항)

다. 근거법규

-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백창기)

본조례는 호적과태료 부과를 해태한 자로부터 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결정에 있어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간혹 마찰이 생기므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민원업무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코자 불필요한 첨부자료등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으므로 제출된 원안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질의 및 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전원찬성)

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.

제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신고를 지연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신고(신청) 지연사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중 “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”를 삭제한다.

[별표2] 및 [별지 제1호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과태료 부과기준

| 해 태 기 간 | 과 태 료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제130조 위반 | 제131조 위반 |
| 1 월 미 만 | 10,000원 | 20,000원 |
| 1 월 이상 3 월 미만 | 20,000원 | 40,000원 |
| 3 월 이상 6 월 미만 | 30,000원 | 60,000원 |
| 6 월 이 상 | 50,000원 | 100,000원 |

[별지 제1호서식]

신고(신청)지연사유서

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고(신청) 의무자 | 성명 | 생년월일 |
| | 본적 | |
| | 주소 | |
|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| 성명 | 생년월일 |
| | 신고(신청)의무자와의관계 | |
| 사건발생 상황 | 신고(신청)내용 | |
| | 신고(신청)사유발생일자 | |
| | 신고(신청)일자 | |
| | 지연기간 | 1월미만, 1월이상~3월미만 3월이상~6월미만, 6월이상 |
| 신고(신청) 지연사유 | (육하원칙에 의거 작성) | |

년 월 일

제출인 (인)

구청장(동장)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4조(부과기준및면제) ①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, 신고 의무자의 학력, 생활정도,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야 하며,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.</p> | <p>제4조(부과기준및면제) ① 구청장은 별표2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5조(부과등) ① 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.</p> | <p>제5조(부과등) ① 구청장은 신고를 지연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(신청)지연 사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6조(사전징수)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<u>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</u>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.</p> | <p>제6조(사전징수)(삭 제).....</p> |